

# 精油會社의 販促活動과

## 流通業界의 当面問題



金 永 俊

(動力資源部 生産流通課・行政事務官)

### I. 流通構造의 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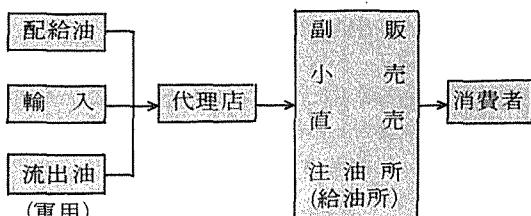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石油製品이 燃料油로서 販売되기 시작한 것은 1930年 美國의 石油會社인 Standard Vacuum Oil Co와 The Texas Oil Co, 英國의 Shell Oil Co 등 3개石油會社가 現在의 中央石油(株)의 前身인 朝鮮中央米油(株)와 現在의 高麗石油 前身인 西朝鮮米油(株), 北朝鮮米油(株)等 3개의 石油代理店을 設置하고 그 산하에 3개의 給油所와 各郡地域에는 数個의 副販人們이 石油流通을 担當하였다.

그 후 1935年 6月 日本人에 의해 設立된 朝鮮石油(株)가 元山아오지 工場을 稼動하여 日當 9千배럴規模로 最初生産을 始作하였으나 이는 軍에서 使用하는 것을 目的으로 精製業을 담당하였으며 1945年 8月 15日 解放後에는 美軍政府의 配給代行機關에 의해 石油供給이 이루어져 왔으며 1949年 1月 大韓石油貯藏會社(KOSCO)가 設立되어 1964年 4月 油公울산精油工場이 日當 35千배럴規模의 生産을 始作할 때까지 國內油類供給을 담당하게 되었는 바, 이때 全國에는 油公 산하 34개의 石油代理店이 設置되어 수송기능과 저유기능, 금융기능 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大需要處에 대해서는 油公이 직접 供給하는 直配制度와 수송 저유기능만을 담당하는 도매업 기능의 代理店, 實需要者 등에 直接供給하는 소매업의 注油所와 販売所(副販店)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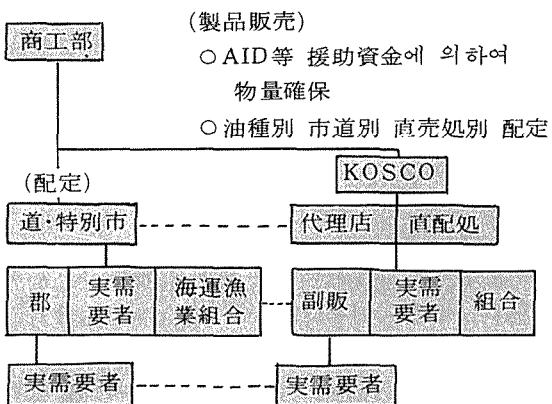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은 流通構造가 形成되어 油類供給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油類需要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더욱 더 油類使用을 촉진시키게 된 要因은 1966年 무연탄 파동을 들 수 있는 바, 大部分의 產業體에서

(1964年 以前 販売経路)



(KOSCO 設立後 配定 経路)



는 燃料転換을 서두르게 되어 油類의 急激한 需要增加를 나타내었으며 特히 이때 B-C油의 需要增加는 무려 33%에 달하게 되어 政府에서는 石炭產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1968年 1月에는 石油類稅를 調整하여 燈油稅率를 30%로 책정하였고 同年 3月에는 捷發油稅를 100%에서 무려 200%로 인상조정 한바 있으나 油類需要는 출어들지 않았고 每年增加하게 되었는바, 精油工場의 新·增設의 必要性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 II. 流通秩序確立을 為한 政府의 統制

1968年 10月 湖南精油는 大韓石油公社에 위탁처리 하여오던 石油製品을 市販하기始作하면서 油公과 湖南精油는 最初의 販売競爭을 시도하게 되었는바, 소매업을 担當하는 注油所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各種支援과 直壳處를 多數確保하기 위하여 外上期日을 연장하는등 販売競爭時代를 예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販売競爭은 1969年 6月 湖南精油 여수工場이稼動을始作한 때부터 더욱 치열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油類販売業을 하게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販売業所가 난립되기 시작하였다.

그結果一部代理店들은 신용판매에 의한 不良債權增加와 수송장비확보, 저장시설확충등過多한 施設費投資등으로 流通秩序는 극도로 문란하게 되었는바 이에 对한 政府의 統制를 要請하게 되어 1969年 2月 11日 당시 商工部에서는 石油製品에 对한 最高価格을 告示하게 되었으며, 1970年 1月 1일에는 法律 第2183호로 石油事業法을 制定하게 되었다.

또한 1971年 5月에는 京仁에너지의 仁川工場이稼동을 시작하여 石油販売競爭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1968年 代理店 34個, 注油所 283個였던것이 代理店 56個, 注油所 1,378個로 增加 되었으며

이와같은 난립 현상은 販売業所의 収支改善을 위한 变태적인 方案으로 定量을 속여 販売하는 行為, 石油製品에 異物質을 혼합하여 品質을 低下시키는 등 流通秩序를 문란시키는 結果가 되었을뿐 아니라 많은 代理店과 注油所들이 도산되는 社會問題까지 発生되어 政府는 1972年 6月 21日 石油流通構造 및 流通經路에 関한 最初의 調整을 위하여 石油事業法에 의한 調整命令를 發動하여 注油所 및 代理店의 新規設置가 石油事業法에서는 申告制임을 감안 消防法에 의한 위험물 설치 허가를 不許하도록 各市·道知事에게 指示한 바 있으며, 이와같은 조치가 販売業所 난립의 根本적인 対策이 되지 못하자 流通構造 및 流通經路에 関한 第2次 調整命令를 發動하게 되었는바, 注油所의 경우 事後申告制度를 事前申告制度로 变更하여 石油類製品販売業 申告要領을 改定하여 申告要件에 精油公社의 販売承認書 및 代理店과의 石油製品供給 契約書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精油公社와 代理店에 对해서는 承認書發行이나 石油製品供給契約締結을 禁止시키게 되었다.

그후 보다 根本적인 対策을 강구하던中 1975年 7月 25日에는 石油事業法을 改定하여 石油販売業에 대한 申告制를 許可制로 变更하는 등 石油販売業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게 되어 石油流通秩序가 다소 安定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 III. 精油公社의 販売競爭

지금까지의 精油公社 販売競爭 양상은 一般商品의 매스콤을 通한 廣告等 多각적인 販売戰略形態와는 비교할 수 없는 広告宣傳 없이 安定된 상황속에서 販促活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왔으며 특히 1, 2次 石油波動으로 인한 需要供給의 不均衡은 現金을 支給하고도 適期에 油類供給을 받지 못하는 狀況 속에서 動力資源部 石油局職員들은 精油公社의 在庫調查와 供給實態를 確認

〈石油販売業所 現況〉

販売業区分	年 度	72	73	74	75	76	77	78	79
注油所数		1,378	1,404	1,430	1,430	1,430	1,426	1,449	1,449
代理店数		56	56	56	76	76	76	76	76

## □ 特輯 / 公正去來法 □

하고 需要者들로부터 油類供給을 督促하는 電話를 받는 것으로 日課를 보내야했던 지난날 들을 기억한다면 精油会社에게는 옛날 옛적과 같은 좋은 時期였음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80年代의 경기침체에 따른 油類需要減少와 在庫過剩은 精油会社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要因이 되었으며 특히, 81年 6月에 이루어진 精油会社의 販売競爭狀況은 70年代와는 너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바, 81年 4月 湖南精油가 15万B/D를 增設하여 38万B/D로 拡張함에 따라 市場確保競爭으로始作된 広告 宣伝은 油公을 비롯한 他精油会社에 파급되어 매스콤을 通한 各社의 製品宣伝, 注油所에는 萬國旗를 방불케 하는 宣伝物과 스티카부착, 販売促進을 為한 各種物品支給, 販売価格引下등은 오히려 消費者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특히 既存揮發油에 세척제를 添加하여 自動車엔진을 세척, 挥發油를 完全燃焼시킴으로 大氣汚染을 防止하고 走行거리 増加로 挥發油消費를 3~10%까지 節減시킬 수 있다는 호남정유의 CX-3宣伝과 改質油의 配合比率을 높여 옥탄価를 86에서 89로 向上 시킴으로써 始動이 容易하고 엔진壽命을 延長시키며 엔진의 異狀暴發을 防止하여 挥發油의 消費를 4~5% 節約할 수 있다는 油公의 뉴슈퍼와 京仁의 하이파워宣伝등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販売競爭이 挥發油의 品質을 다소 높이기 위한 結果로 評価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重要한 評価는 精油会社에게는 過重한 資金을 負担시켜 財務構造를 悪化시켰으며, 販売価格引

〈精油会社別 点有率〉

(단위 : %)

社別	油公	湖南	京仁	双龍	極東	計
精製施設能 力点有率						
80	44	36	9	9	2	100
81	35	48	8	8	1	100
82	35	48	8	8	1	100
販売市場 点有率						
79	52.0	36.0	10.7	-	1.3	100
80	45.4	38.7	8.6	5.9	1.4	100
81	44.0	37.7	8.7	7.9	1.7	100
82	45.8	37.6	7.4	7.2	2.0	100

下 効果가 最終消費者에게는 미치지 않고 中間流通業者인 一部 注油所業者에게만 귀속시켜주었고, 精油会社의 直營代理店과 一般代理店間의 갈등을 악화시켜 流通市場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結果였음을 크게 否認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精油会社와 一般消費者가 保護될 수 있는公正하고 自由로운 販売競爭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問題를 보다 깊이있게 검토하여 現在의 販促活動이 바람직한 方法인 것인가 하는 反省이必要할 것이며 精油会社 스스로에 의하여 어려운 問題들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 아닐까 싶어진다.

## IV. 石油流通業界의 当面課題

石油販売業所의 亂立에 따른 제반문제 해소를 위하여 72年부터 石油販売業의 新規許可를 억제하여오는 과정에서 急激히 成長한 重化学工業의 發達과 国民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른 車輛增加, 営農方法의 機械化에 따른 油類需要增加 등需要는 急增하는 反面 石油販売業所의 新規設置가 禁止되는 모순을 보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既存注油所들이 利權化 되는 등 심각한 社會問題까지 發生되는 問題들이 제기되자 政府는 統制위주의 行政形態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市場機能에 의한 自律競爭促進을 위하여 81年 3月 14日 그간의 石油販売業 新規許可 억제방침을 全面解除하게 되었고 그동안 위험을 취급소에 대한 安全管理對策의 일환으로 内務部가 消防法規에서 規定하고 있던 注油所間 거리제한 1km를 140m로 완화하는 등 많은 規制들이 완화되자기준 注油所業界에서는 販売業所의 火災危險을 政府가 유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을 要請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石油販売業界는 70年代의 高度成長에 따라 油類需要가 急増한 상황속에서도 政府의 石油販売業 新規許可 억제방침에 따른 二重利益을 보장받는 상황이었으나 80年代에 들어서면서 狀況은 急격히 变하여 경기침체로 油類需要는 急격히 줄어든 반면 車輛燃料의 LPG代替와 81年 3月 14日 石油販売業 新規許可 억제방침 전면 해제조치 등이 기존 石油販売業界에는

충격으로作用되고 있는 狀況속에서 内務部가 82年 9月 5日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安全對策의 일환으로 소방법 규에 規定되고 있는 注油所間 거리제한 1km를 140m로 완화하는 것을 内容으로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施設의 基準等에 関한 規則”을 개정하게 되자 기존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게 되었다.

81年 3月 14日 注油所 新規許可 억제방침 해제 이후 全国에는 約 436個의 注油所가 增加되어 全国에는 1,938個의 注油所가 設置되고 있음은 適正數를 훨씬 넘는 亂立現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注油所間 거리제한 완화조치는 大都市地域内에 巨大한 火藥庫를 밀집시키게 된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一. 車輛燃料의 LPG代替와 油類需要減少, 注油所의 增設등은 石油販売業界의 경영을 더욱 어

렵게 하고 있는바, 京畿道의 경우 注油所 数는 241個業所로 1981年 8月中 業所當 平均 販売量은 1,086D/M이었으나 1982年 8月中에는 業所當 706D/M으로 34.9%가 減少販売되고 있어 이를 業所當平均值로 보면 517D/M의 극히 영세한 実情으로 倒産을 免할 수 없는 実情이라는 주장이다.

二. 따라서 石油販売業界에서는 원활한 石油流通과 流通業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石油販売業에 对한 地域別T/O制를 實施하여 車輛台數나 人口數에 의한 規制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業界의 주장은 代理店과 注油所의 유통마진율이 79年以後 거의 增加되지 않고 있는 점.

81년 3월 14일 以後 注油所新規設置가 계속 增加되고 있는점.

영업용 차량의 LPG代替 등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점등은 충분히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운 実情에 앞서 業界가 먼저 理解되어야 할 점은 政府의 經濟運用基調가 市場機能에 의한 自律競爭을 促進시키려는 政策임에 비추어 각종規制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81年 3月 14日 以後 新規注油所의 增設은 72年부터 81年2月까지 注油所의 新規許可를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注

(注油所 増設 現況)  
(81. 3. 14~82. 11. 7現在)

市道 規 新 許 可 業 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	20	12	28	24	19	

대구시	천북	천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計
2	34	74	76	51	15	9	436

(年度別 油類消費実績)

(单位 : 千Bbl)

75	76	77	78	79	80	81	82. 10末
113,618 (8.5)	130,403 (14.8)	151,203 (16.0)	166,895 (10.4)	186,032 (11.5)	183,497 (△1.4)	182,252 (△0.9)	146,281 <sup>1)</sup> (△2.1)

( ) 내는 前年對備增加率 對比增加率

<sup>1)</sup> 81年 10月 대비 增加率

(휘발유 및 차량용부탄 소비실적)

(단위 : 千Bbl)

年度 油種	75	76	77	78	79	80	81	82. 10末
휘발유 (증△감율)	4,176 (△4.9)	5,273 (26.3)	6,952 (31.8)	7,915 (13.9)	8,623 (9.1)	7,019 (△18.7)	6,001 (△14.5)	3,765 <sup>1)</sup> (△23.7)
차량용부탄 (증△감율)	1,655 (45.8)	1,765 (6.5)	1,977 (12.1)	2,079 (5.2)	1,941 (△6.6)	2,536 (30.7)	2,611 (3.0)	3,374 (52.7)

<sup>1)</sup> 81年 10月 대비 增減率

## □ 特輯 / 公正去來法 □

油所新規設置全面解除 조치에 따른 注油所의 增設은 油類需要에 의한 당연한 增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영업용 택시의 燃料를 종전 挿發油에서 LPG로 代替시키는 것은 에너지원의 多元화를 위해 LPG를 보급함으로써 積害문제를 해결하고 握發油보다 價格이 저렴하므로 택시의 料金引上을 완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가피한 事情임을 国民 經濟의 次元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市의 注油所分布現況)

100m 以下	100m~ 300m	300m~ 600m	600m~ 900m	1km以上	計
19	38	67	68	83	275個

특히 注油所業界에서 크게 염려하고 있는 注油所間距離制限緩和조치와 注油所의 亂立문제에 对해서는 注油所가 설치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 車輛運行이 自由로운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하는 特殊性에 비추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地價가 高價이며 施設費가 過多하게 所要될 뿐 아니라 内務部가 注油所間 距離를 制限하기 以前(72年)에 市場條件이 有利한 地域에는 많은 注油所가 距離制限과 관계없이 設置되어 있는 절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注油所를 경영하면過去와 같이 好況을 누릴 수 없다는 認識이普遍化되고 있는 実情이고 보면 注油所의 新規設置가 앞으로 계속 增加될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V. 販売業界의 經營改善対策

이와같이 流通業界의 어려운 事情을 더 이상 미룰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이에 대한 改善対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合理的인 対策을 찾기란 쉬운것만은 아닌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다만 나름대로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 自活能力을 찾아야

첫째, 石油販売業界는 自活能力을 찾는데 主力하여야 할 것이다. 代理店과 注油所는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반면 他用途로의 転業이 매우 어려운 実情이고 보면 石油販売業이 종전과

같이 石油類만을 판매하여 경영효과를 높이려는 경영전략에서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79年 1個 注油所가 販売한 總物量은 15,400 배럴로 추정되며 이중 握發油 販売물量은 6,900 배럴로서 全體의 45%정도였음은 業務에 의한 경영전략으로의 전환을 時急히 要請하는 資料가 된다 하겠다.

비교될 수 있는 좋은예로, 日本에서는 燈油 販賣業所가 全國에 約 13万個로 추정되나 이들 업소는 대부분 薪炭, 米穀, 철물, 음료등을 판매하여 全體収益의 約 50~60% 수준을 충당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는 個人이 경영하는 注油所의 約 30% 정도가 식당, 세차, 각종 씨비스업 등을 業務하고 있음은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또한 内務部에서도 지난 9月 15日 “소방시설의 設置 및 위험물제조소등 施設의 基準등에 関한 規則”을 개정하여 一定한 施設要件을 갖출 경우에는 注油所의 他用途兼業을 허용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것이다.

### 적절한 許可基準 마련되어야

둘째는, 現行石油販賣業許可是 各市·道知事가 유류수급사정등 地域別 特殊事情을 감안, 별도의 許可基準을 告示하여 許可業務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地域別 주유소분포상황과 유류수급사정, 인구분포도, 공공건물과 교육시설등의 밀집도, 주거·상업·녹지 지역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당해 지역내 適正한 許可基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無秩序한 注油所의 亂立을 방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韓國石油·ガス流通協会가 먼저 地域別 石油販賣業所의 適正數가 얼마여야 할 일인지도妥當性 있게 研究検討하여 各市·道別 告示內容에 반영되도록 說得力있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사전에 철저한 事業性 검토를

셋째는, 石油販賣業을 希望하는 경우에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事業에 착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事業性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投資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나 석유판매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과거 石油販売業이 好況을 누렸다는事實에 매혹을 느껴 석유판매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얘기이고 보면 계속되는 신규허가, 영업용택시의 LPG代替, 수요감소, 막대한 투자비소요, 他業으로의 転換이 용이하지 않는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檢討가先行된 후 事業性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韓國石油·ガス流通協会나 大韓石油協會등 專門團體에서 正確한 統計資料作成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널리 弘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II.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問題들과 나름대로 나열해보는 방안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난잡한 내용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精油會社가 당면하고 있는 販売促進問題와 이로인한 流通業界의 고충은 어느 限定位된部分만의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全體 国民의 입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가장 時急한 先決課題는 정유회사와 石油販売業体 스스로가公正하고 自由로운 경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를 目的으로 하는 公正去來를 하고 있는지 하는 反省

이 있어야 하겠으며 消費者保護를 위한 品質改善과 正量去來秩序確立등에는 어느정도의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의 기여방안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들과 流通단계별로 부여되어 있는 제반기능을 어떠한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진지한 자세가 時急히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로서도 유통단계별로 부여되어 있는 제반기능을 어떠한 형태로 再定立 할 것이며 現油価에 반영되어 있는 유통단계별 마진액이 現實의 으로 適正한 공약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지하는合理的인 가격구조의 평성, 정유회사의 直營販売制度와 一般販売業所와의 심각한 갈등해소 방안등이 무엇인가 하는 流通構造改善 方案의 당면과제의 重要性과 우리가 처한 여전속에서 石油만이 갖는 特殊事情이 公正去來法과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깊은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石油販売業所의 無秩序한 亂立은 消費者, 精油會社, 販売業体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일찌기 체험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最善의 方案 또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政府의 경제운용기조가 国民經濟의 要請이 없는 한 政府의 간여를 배제하고 기업의 창의성에 맡기려는 政策임을 감안할 때 石油業界 모두가 어려운 問題들을 상호 協力하고 노력함으로써 보다 균원적이고 깊이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원하는 것이다.\*

